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장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5. 9. 8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8월 31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5년 9월 5일 원안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05. 9. 8)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김연수)

가. 제안이유

거주에 관한 증명은 발급근거가 폐지되었기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 · 공포됨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관련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 등 · 초본발급 수수료 면제조항 삭제 (안 제6조제1항제2호).
- 2) 수수료의 경감규정 신설 (안 제6조제3항)
 -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감면대상에 대하여 수수료 경감비율 규정
 - 나) 경감비율 : 50%
 - 다) 경감대상
 -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 ·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 거주에 관한 증명 삭제 (안 별표의 1)

라.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개정(안 별표의 3)

- 1) 녹음테이프, 영화필름에 대한 수수료 규정 신설
- 2) 수수료 산정기준의 세분화 (기본단위요금 + 초과요금)
- 3) 전자우편을 통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전자파일 복제의 기준을 적용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김 충 식) —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4. 質疑 및 答辯 要旨 (생 략)

5. 討 論 要 旨

○ 이종환 위원의 수정안 동의

6. 修 正 案 의 要 旨

○ 수정이유

-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조항은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삭제하고

- 또한 동조동항제2항의 본문 내용은 너무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과 같은 입법방식으로 이를 각 호로 신설하며

- 후단의 조항을 전단으로 재배열하는 등 조문 전부에 대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서 조례의 본문 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음.

○ 수정안 본문

안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 증명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제8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신설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7.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7. 審 査 結 果 : 수정가결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 증명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제8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신설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7.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경우에는----- ----- -----.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 증명의 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 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 는 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 치단체의 직무상 필요 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1. ----- ----- ----- 제 증명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복지 법 제29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2.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29 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조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 청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6조의 규정에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3.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신청	3. 「문화재보호법 시행 령」----- ----- ----- -----	7.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8. 「문화재보호법 시행 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 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